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21일, 박정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2025.9.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6차 전체회의(2025.9.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
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정의원)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업 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탄소가격보다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감축기술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배출권 가격이 낮아 기업의 감축투자 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는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배출권 시장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는 취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를 수립·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적 근거와,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기업의 배출권 제출에 대한 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밖에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검증협회 관리를 개선하는 등 입법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배출권 시세조작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의 시세조작 금지 규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배출권거래계정의 등록 조항 신설, 배출권 거래소, 검증기관 및 검증협회 등에 대한 감독 강화, 과징금을 부과받은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제출의무 명시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거래를 억제

하여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며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배출권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탁금 임의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예탁금 지급 우선순위, 개인신용정보 제공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과징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미제출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배출권 미제출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배출권 제출의무를 대신한 상황에서 추가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적인 부과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